

서식 IV-17 |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

공무원 겸직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**1.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**

○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*인지? *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·비영리업무		
-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?	예	아니오
-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?	예	아니오
- 단순 취미 활동, 학업 등 업무로 볼 수 없는 영역인지?	예	아니오

2.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

○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?		
-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? ※ (예) 「변호사법」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※ 「학원법」 제3조(교원의 과외교습 제한)에 따라 교원은 과외교습 불가	예	아니오

3. 사교육업체 관련 검토

○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사교육업체 관련 허가 가능 대상인지?		
- 사교육업체 관련 강의, 문항 출제, 출판, 컨설팅 등의 업무인지? ※ (관련성이 있더라도) 공익 목적 컨설팅·콘텐츠 개발·자문 등에 한해 심사 가능	예	아니오
-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입시(실기학원), 편입 학원 등에 강의·출강하는 경우 또는 일반 교과학 습도서에 수록된 유료 강의 동영상 제작 참여 등의 업무인지? ※ (관련성이 있더라도) 공익 목적 컨설팅·콘텐츠 개발·자문 등에 한해 심사 가능	예	아니오

4. 겸직허가 요건 검토

○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?		
-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? *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예: 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, 인·허가 등에 관계, 법령에 근거한 지도·감독, 국토계획·주택정책 등의 수립에 관여 등)로 판단	예	아니오
-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*를 이용하는지? *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	예	아니오
○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?		
-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?	예	아니오
○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?		
-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? * (예) 유흥·시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·학생·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	예	아니오

5. 최종 검토 의견

허가 여부	검토 의견
	(허가 시) 허가 기간 및 허가 범위 내 활동 등 준수사항 명시 (반려 시) 신청을 반려하는 구체적 이유 명시